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3 선고 2019가합74730(본소), 2019가합77197(반소) 판결
[공사대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창신, 배동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김우준, 류수연, 신민식

피고(반소원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오인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가영현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9. 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12,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304,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시설물유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9. 3. 13. B 아파트 각동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에 관한 공사업체 선정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공고를 했고, 원고를 비롯한 7개 업체가 위 입찰에 참여하여 원고가 낙찰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4. 9. 피고와 총 공사금액 45억 6,400만 원에 이 사건 입찰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7. 30. 피고로부터 계약금 912,7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지급기일인 2019. 4. 20.을 도과한 2019. 7. 30.에 원고에게 계약금 912,78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원은 계약금 지급기일인 2019. 4. 20.부터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15,304,690원($912,780,000\text{원} \times \text{상사이율 } 6\% \times 102\text{일}/365\text{일}$)에 우선 충당되었고, 나머지 897,475,310원이 원금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계약금 15,304,690원($912,780,000\text{원} - 897,475,310\text{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 1) 원고는 이 사건 입찰 절차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과의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입찰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은 피고의 전 대표자 C의 대표권 남용으로 인한 것이며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은 모두 무효이다.
- 2)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게 착오 및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었다.
- 3)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게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 4)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912,7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2019. 10. 4.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계약 무효 ·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다른 입찰 참여업체들과 담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C이 대표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착오 내지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착오나 기망행위의 내용은 주장하고 있지 않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2019. 10. 4. 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민법 제673조 소정의 임의해제권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이 정한 피고의 해제사유는 ‘원고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 어음 및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 · 가처분 · 강제집행 또는 회사의 정리절차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인데,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계약 조항이 없더라도 당연히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위 조항은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권을 재확인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민법상 도급인의 임의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해제되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대금 등 합계 419,605,352원 및 이행이익 1억 3,200만 원을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위 금원 합계 551,605,352원은 반소청구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지출한 법무비용 8,3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 이를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경량지정공사 공사비 등의 공사대금, 기타 공과금,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되어 지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이행이익이 1억 3,2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서류는 단지 입찰 과정에서 원고가 산정한 견적에 불과할 뿐이다), 달리 원고의 이행이익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계약은 2019. 10. 4.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912,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날인 2019. 7.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1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기홍, 판사 정현욱, 판사 고철만